

RCEP 100%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

2021. 12. 7.

관 세 청

수출입기업 대상 「RCEP 100% 활용 지원 캠페인」을 추진하여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RCEP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

RCEP 활용지원 체계 구축

RCEP 100% 활용지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청·국내외 기관을 포괄한 전담조직(본청·세관) 구성

- ▶ [본 청] RCEP 활용지원단 ⇨ 이행 총괄
- ▶ [세 관] RCEP 활용지원 센터 ⇨ 현장 지원
- ▶ [범정부] 관계 부처·유관 기관과 협의체 구성 추진

①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활용 지원

RCEP 원산지 제도의 핵심인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활용도 제고

- ▶ 협정 발효 前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조치 실시
 - · 시전 신청·심사 ⇒ 발효 즉시 자율증명 활용
- •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(旣 협정 인증업체)
- ▶ 인증수출자 DB 구축 및 회원국간 정보 공유

|② 수요자 맞춤형 RCEP 활용 지원

관세행정 전문성을 활용한 현장 중심 지원 서비스 제공

- ▶ 세관별 RCEP 활용 밀착 지원
- 컨설팅, 설명회 간담회, 민간 전문가 양성
- ▶ 1국 多협정 선택적 FTA 활용 지원
- 협정국별 PSR·최적세율 등 정보 제공
- ▶ RCEP 원산지 판정 지원(FTA-PASS)

③ 역내국간 관세협력 기반 구축

세관당국간 협력 체계 구축하여 RCEP 이행 현안에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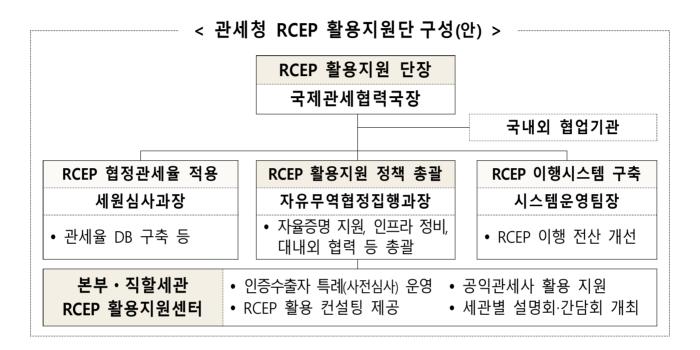
- ▶ 일본과 RCEP 이행협력 MOU 및 세관 당국간 협력회의 정례화
- ▶ 거점국가 중심 관세외교 강화, 권역별 핫라인 구축
- ▶ RCEP 비준국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

④ RCEP 집행 인프라 정비 국내입법 지원, 증명절차 간소화, e-CO 확대 등 집행 기반 마련

- ▶ RCEP 국내법령 정비 발굴·건의
- ▶ 협정 이행지침 마련·공개
- ▶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
- 간이확인 법제화, 간편인정 확대 등
- ▶ 역내 전자적 원산지증명 교화 확대

Ⅱ 이행 체계

- □ 본청에「RCEP 활용지원단」, 전국 본부·직할 세관*에「RCEP 활용지원 센터」(권역내 세관 포함 총 146명) 설치
 - * 인천세관, 서울세관, 부산세관. 대구세관, 광주세관, 평택세관



Ⅲ 관세행정 지원대책

1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활용 지원

□ [인증 특례] RCEP 발효 전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 하여 발효 즉시 인증수출자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 활용 지원

[현행] 기관발급 인증 시 혜택

•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**입증서류** (원산지소명서 등) **제출 생략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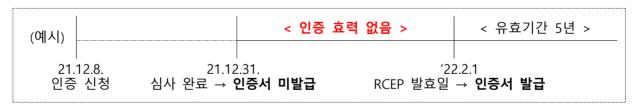
[향후] RCEP 인증 시 혜택

- (접수) 관할지 본부(직할)세관을 통해 RCEP 품목별인증수출자 신청

<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>

구 분	연락처	이메일
 인천본부세관	032-452-3169	incheonsupport@korea.kr
서울본부세관	02-510-1387	FTA010@korea.kr
 부산본부세관	051-620-6963	busansupport@korea.kr
대구본부세관	053-230-5192	daegusupport@korea.kr
 광주본부세관	062-975-8195	ftafta071@korea.kr
평택직할세관	031-8054-7175	fta016@korea.kr

- (심사 간소화) RCEP 중・아세안・베트남 협정간 원산지결정기준 분석을 통해 既 인증수출자는 간이한 심사* 절차 적용
 - 既 인증 협정과 동일 품목(HS 6단위기준)으로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(PSR)이 완화(850개 대상품목 별도 공지)된 경우 인증 심사 시 제출서류 간소화
 [現]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(BOM, 제조공정도 등) 등 14종의 서류 제출
 [改] 원산지소명서, 확약서,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등 3종 ⇨ 심사 생략
- (인증서 발급) 인증 효력은 협정 발효 이후에 부여
- (인증특례 신청기간) '21. 12. 8. ~ '22. 1. 28.
 - ※ 인증 신청서 접수 시 20일 이내 심사(보정기간(5~10일)은 제외함)



- □ [DB구축] RCEP의 인증정보 공유 의무* 이행, 원산지 자율증명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정보 DB 구축 및 회원국간 공유
 - * [공유정보] 인증수출자의 상호, 주소, 인증 번호, 발급일 및 만료일(가능한 경우로 한정), 최소 HS2단위 수준의 인증 적용대상 상품목록 등
- □ [홍보·안내]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가능한 RCEP 회원국 및 적용 시점을 신속히 안내·공지

□ [현장지원] 세관「RCEP 활용지원 센터」중심으로 컨설팅, 설명회· 간담회 등 실시하고, RCEP 전문 관세사(민간 전문가) 양성 · 활용 ※ 수출입기업, 관세사 대상 RCEP 활용 순회설명회 개최(본청·본부세관 주관) □ [최적협정] 1국 多협정 환경에서 기업의 FTA 활용이익 극대화를 위해 회원국별 PSR·최적세율 등 정보 제공 ☞ 중국(APTA, 한-중, RCEP), 베트남(한-아세안, 한-베, RCEP), 인니(한-아세안, 한-인니, RCEP) □ [FTA-PASS] 시스템을 통해 RCEP 원산지 판정, 서류 발급 등 지원 ☞ 관세차별 대상 물품의 원산지판정 추가요건 관리를 시스템 內에서 지원 등 □ [FTA포털] RCEP의 특징·개요, 협정 활용방안, 일본 통관제도*, RCEP 활용 유망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(다국누적 활용) 등 특화정보 제공 ☞ 수출입신고 절차, 관세부과, 품목분류체계, 관세율, 일본이 체결한 FTA 등 역내국간 관세협력 기반 구축 3 □ 「韓日 협력」신규 FTA 체결국인 일본과「RCEP 이행협력 MOU」로 이행협력 기반을 마련하고,「세관간 협력회의」정례화(年 1회) ☞ (**효과**) 원산지규정·검증·통관 등에 대한 상호 행정지원과 협력 강화, 실무 이행 현안 해결 및 정보 공유, RCEP 원산지소위에서 공동 대응 □ [관세협력] 거점국가(관세관 파견국 등) 중심으로 관세외교를 강화하고, 권역별 핫라인을 구축하여 이행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가동 ☞ (효과) RCEP 주요 쟁점 관련 협정 상대국별 이행 동향 파악, 협정 상대국의 통관애로 등 이행 이슈 발생 시 이행위 · 영상회의 등을 통해 적기 대응

수요자 맞춤형 RCEP 활용 지원

2

※ 협정 발효 前 RCEP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추진

제도적 기반 마련 등 집행 인프라 정비 4 □ [국내입법 지원] 집행 근거 명확화, RCEP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명서식 법제화 등 국내법령 정비 방안 발굴ㆍ제안 ☞ RCEP 원산지증명서식 법제화, 원산지증빙서류 서식 등 정비, 인증수출자 DB 구축 근거 명시,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 입법화 등 □ 「이행지침〕 협정 발효 초기 통일된 관세행정 집행과 주요 쟁점별 명확한 적용을 위해 실무적 절차를 규정한 협정 운영지침 제정 ※ RCEP 회원국간 이행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'22.1월초 공개 예정 □ [관세차별] 관세차별 적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·입증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, 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가공하여 공개 ☞ RCEP은 동일 품목이라도 회원국(원산지국가)에 따라 양허 관세율이 차등 적용 (관세차별) 될 수 있으며, 동 물품은 원산지국가 결정 시 추가요건 이행 요구 □ [e-CO 확대] EODES 개선(既 구축 국가), 조회형 e-CO(저비용 · 고효율) 도입으로 원산지증명서 공신력 제고 및 디지털 무역기반 고도화 ※ RCEP 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사본(예: PDF 등) 인정기준 입수·공개 예정

- □ [중명절차 간소화] 국내제조 사실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간이확인 제도 법제화 및 혜택 확대, 간편인정 대상 품목 확대 등
 - ☞ (RCEP 활용) 對日 주력 수출물품 등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 신규 발굴

Ⅳ 성과 모니터링·환류

- □ RCEP 발효 後 일정기간(월·분기) 협정국별 교역량, FTA 활용률 변동 추이를 **모니터링**하고 국내이행 지원대책에 대한 **성과분석** 실시
 - RCEP 집행 과정에서 발굴된 **현장애로** 등은 **정책** 개선^{*}에 **반영**
 - * 이행협상 의제 상정, 세관 당국간 실무협의, 법령개정 등 국내 제도 반영 등